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238호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제2022-33호, 2022.4.27)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맞춤형화장품은 개인별 피부 특성, 향, 색소 등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 또는 소분하는 것으로, 같은 내용물을 사용하는 경우 동일 내용물의 반복 보고로 영업자에 과중한 서류 작성 부담이 될 수 있어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현재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품별로 원료목록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나, 동일 내용물을 사용한 제품은 같은 그룹(제품군)으로 하여 동일 내용물 반복 작성을 없애 동일 내용물에 혼합한 원료를 일괄 보고할 수 있도록 맞춤형화장품 원료 목록 보고 방법을 개선(안 제2조, 안 별표2 및 별지 제8호 서식)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화 : 043-719-3402, 팩스 : 043-719-3400, 이메일 : sesisk@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 호

「화장품법」 제5조제6항에 따른 「화장품의 생산·수입 실적 및 원료 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의 생산·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화장품의 생산·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제품별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동일한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하여 만든 제품들(이하 “제품군”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일괄 보고할 수 있다.

별표 2의 2.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실적 작성 요령 중 제품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u>제품명 또는 제품군명</u>	제품명은 판매내역서의 제품명과 동일하게 기재하거나 제품군명은 동일한 내용물로 만든 여러 제품중 판매업자가 대표 제품명을 기재하고 대표제품명 옆에 괄호란에 제품군이라 표시 예) 00 로션(제품군)
------------------------	-----------------------------------------------------------------------------------------------------------------------

별지 제8호서식 중 ‘제품명’란을 ‘제품명 또는 제품군명’으로 개정한다.

부 칙 <제2024- 호, 2024. .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